

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(민간소공연장지원) 2차공모 FAQ

<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(민간소공연장지원)> 2차공모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. 지원신청서 작성 시, 아래 내용을 함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2021. 6. 28)

순	구분	Q&A
1	사업운영	<p>①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사업 내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의 추가공모는 언제 진행되나요? ⇒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은 총 두 차례의 공모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며, 8월과 11월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아직 정확한 일정은 미정이오니, 추후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② 공연을 12월 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 경우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 ⇒ 정산은 사업종료 이후 2주 이내 실적보고서 및 사업 통장 거래내역, 프로그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다만, 교부-사업추진-정산 등 모든 절차가 당해연도에 종료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업수행은 12월 15일까지 추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</p>
2	지원신청자격	<p>③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미등록공연장인 경우 지원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요? ⇒ 아쉽게도 미등록공연장은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 현행 공연법상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모두 공연장 등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공연장만을 지원합니다. 공연장 및 스태프, 관객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</p> <p>④ 공연장 임대차 계약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가 되며,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다. 이럴 경우에 지원이 불가능한가요? ⇒ 본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기간(2021년 12월 31일)까지 지속 운영이 가능한 공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계약이 사업기간 도중 종료되는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,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</p> <p>⑤ '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'에 선정됐을 경우, 신청이 불가능한가요? ⇒ 지원신청은 가능하나, 해당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 받으시는 대상은 본 공모의 인건비 및 사례비 편성이 불가합니다. 더불어,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 받으신 동일프로그램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, 향후 인건비 중복집행 및 프로그램 중복 진행 확인 시 집행금액은 환수처리 될 수 있습니다.</p>
3	지원내용	<p>⑥ 지원을 신청하려는 공연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 공연이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 ⇒ 공연 분야에 대한 질의사항의 경우,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단체에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공고 안내문에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. 공모 안내문을 살펴봐주시기를 바라며, 해당 내용은 심의기준 가운데 '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기여도' 항목에 대한 심의위원의 평가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.</p> <p>⑦ 사업기간 동안 진행해야하는 최소 공연 횟수가 따로 있나요? ⇒ 1회 이상의 공연을 하시되 별도의 기준 횟수는 없습니다. 다만 '계획의 실현 가능성'과 '공연장 운영의 지속가능성'은 주요한 심의기</p>

순	구분	Q&A
		<p>준으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⑧ 1차공모 선정단체 입니다. 2021년 8월~12월 기획 프로그램 작성 란에, 1차 공모 시 제출하였던 동일한 기획프로그램과 작성은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는데,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나요? ⇒ 1차공모 시 제출하여 주셨던 기획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사업운영비를 지원받으신 부분이기에, 동일한 프로그램의 내용작성은 불가하며 새로운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셔야 합니다. 중복 프로그램 진행 및 정산 방지를 위하여, 1차공모 시 지원받은 프로그램의 진행 현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</p>
4	지원신청서 작성	<p>⑨ 운영경비는 50%까지 책정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, 운영경비는 어떻게 구분 하나요? ⇒ 운영경비란,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, 상근 운영인력 인건비(4대보험 가입 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인력에 한함), (공연장 임차료), 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.</p> <p>⑩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산출내역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? ⇒ 참여역할, 참여기간, 소득구분, 참여자 연령, 사례비 지급금액 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분류하고 고용보험료를 편성합니다. - 총 예술인 고용보험료 = 총 사례비 * 80%(필수경비 20%공제) * 1.4% 정확한 산출이 어려우실 경우, 추후 사업 선정 이후 사업변경을 통한 확정된 예술인고용보험료 금액으로 변경가능하오니, 위 산출식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보험료로 책정하셔도 무방합니다.</p> <p>⑪ 행사보험이나 상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요? ⇒ 공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(산재보험, 상해보험, 행사보험 등 가입 가능) 심의기준의 '공연장 운영 지속가능성' 중 '공연 출연진, 스태프 및 관객을 위한 공연장 안전관리 계획', '상해보험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계획'에 대해 평가 가능하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⑫ 세부 산출내역 작성하는 표에 지원금과 예산액이 구분되어 있는데, 이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가요? ⇒ 공연장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총 예산액과 그 중 문예진흥기금(보조금)으로 투입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.</p> <p>⑬ 지원신청서 붙임 '확인서', '서약서', '확약서'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? ⇒ (방법1) 신청단체의 전자서명 혹은 전자도장이 있을 경우 해당 이미지 파일을 서명란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. (방법2) 해당 페이지를 출력하여 직접 서명 혹은 단체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지원신청서 내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.</p>
5	필수 제출자료	<p>⑭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? ⇒ (온라인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혹은 (오프라인) 구청, 주민센터, 세무서 방문,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. 간혹 부동산이 아닌 법인 등기부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'부동산' 등기부 등본인지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
순	구분	Q&A
		<p>⑮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과거에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따로 재계약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경우 기존 계약서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? ⇒ 계약서와 더불어, 임대차 계약 관계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3개월(2021년 4월 ~ 2021년 6월) 간의 부동산 임차료 납부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⑯ 공연장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수가 많은 편인데, 각각의 파일을 첨부하면 될까요? ⇒ 제출하실 실적 증빙자료가 많은 편이라면 개별 파일을 첨부하시는 것보다는 한글 혹은 워드프로그램에 포스터, 팸플릿 등 제출하실 자료를 순서대로 첨부하시어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</p> <p>⑰ 제출자료는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? ⇒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지원신청서 작성 페이지의 [첨부파일] 탭에 모두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.</p> <p>⑱ 맥북(Macbook)을 사용함에 따라 파일 첨부 시 파일명의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나타납니다. ⇒ 파일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괜찮습니다.</p>
6	보조금 정산	<p>⑲ 해당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, 정산방법이 무엇인가요? ⇒ 본 공모사업은 1차공모에 이어, 코로나19로 인한 소공연장의 피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, 신속한 지원이 우선시되는 사업입니다. 이에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 다만, e나라도움 정산진행 대신 보조금 통장 거래 내역 및 프로그램 증빙자료(홍보물, 현장사진, 보도자료 등) 제출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집행내역 확인 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, 계획서 대비 예산 과다 집행 등의 항목에 대해 집행 증빙자료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를 별도 요청드릴 수 있으니 관련 서류는 사업 종료 시까지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.</p>
7	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(NCAS)	<p>⑳ 주관기관을 '한국문화예술위원회'로 선택했는데, 지원사업 목록에 사업명이 보이지 않습니다. ⇒ 주관기관 선택 창 하단에 노란색 바탕으로 표시되어 있는 '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TF'를 선택하셔야 사업조회가 가능합니다.</p> <p>㉑ 주관기관을 '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TF'로 맞게 선택했는데 사업명이 여전히 지원 사업 목록에 보이지 않습니다. ⇒ 이 경우, 로그인 하신 아이디가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신 아이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본 사업은 개인이 아닌 단체만 지원신청이 가능하며, 단체 계정이 없으실 경우, 단체회원으로 회원가입하신 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㉒ 신청개요에 실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설정해야 하나요? ⇒ 사업기간은 '2021-08-01~2021-12-31'로 설정하여 주시면 됩니다.</p> <p>㉓ 지원신청서 제출을 마쳤는데 내용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⇒ 지원신청 마감일 이전까지는 지원신청 수정이 가능합니다. 시스템 접속 후 '나의 지원신청현황'에서 지원신청서를 클릭하면 제출하신 지원신청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팝업창 우측 상단의 '회수'버튼을 누르면 수정 가능하며,</p>

순	구분	Q&A
		<p>수정 이후에는 다시 '최종제출'을 해주셔야 정상 점수가 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. ⇒ 시스템 관련 이용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577-87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</p>